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10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지정〉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1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¹⁾에 6·10 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은 6·10민주항쟁은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과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 및 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대통령의 「7·1 담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의미를 가짐²⁾.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u>6·10민주항쟁: 6월 10일</u>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공휴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2) 「헌법학」(2022), 법문사, 성낙인, 213p

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체계>

구분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지정 현황	5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5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총 15일 (일요일, 선거일, 임시 공휴일 제외)
		135개(개별 법률)	
근거	「국경일에 관한 법률」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개별 법률(「소방기본법」, 「약사법」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

* 한글날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6년부터 국경일로 승격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개국·건국 등 국기(國基)와 관련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고(1949. 10. 1),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에 국가 기념일로 규정되어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 규정하였음(2005. 12. 29.)³⁾.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상징인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낸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국경일로 승격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하려는 것임.

국경일 및 기념일로 지정될 경우, 국가의 경사로운 날 또는 국가적

3)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 제53호, 1949.10.1. 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참조.

기념일로 지위가 격상되며, 정부에서 기념행사, 포상, 예산지원, 부처 협조 등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기념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다만, 국경일은 민족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날로써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국경일로 승격 규정 여부는 국경일의 의의, 성격, 목적 등 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1절, 광복절, 제헌절 등과 같이 국기(國基)와 깊은 관련성 여부, 역사적 의의,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일과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경일 지정에 따른 국민화합 등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4) 참고자료

참고**기념일 현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연번	명칭	기념일	주관 부처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기정통부·방통위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6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연번	명칭	기념일	주관 부처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3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4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기정통부·행안부·국정원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부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45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50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5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국가보훈부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기정통부·산업부·원자력위

※ 개별 법률상 기념일 : 약의 날(약사법), 소방의 날(소방기본법) 등 140개